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121656 판결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오지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1. 5.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1,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0. 3. 17. 천안시 서북구 D 대 481.1㎡에 관하여 1990.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2. 3. 위 지상 경량철골조 철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9.6㎡, 부속건물(단층화장실) 4.32㎡에 대한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관련 제1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C은 2018. 6. 27. 관련 제1사건 부동산을 E, F에게 대금 67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7,7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9,300,000원은 2018. 7. 12.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만, 관련 제1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8. 7. 24.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322,500,000원{= 645,000,000(= 677,000,000 - 32,000,000) × 1/2}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729 매매대금, 이하 ‘관련 제1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은 망 G(2016. 9. 8. 사망)로부터 관련 제1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를 C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하였다.

라. 관련 제1사건 소송 재판부는 2019. 6. 28.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매매대금의 귀속 문제는 C과 망 G 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원고 항소 기각으로 2019. 12. 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0. 1. C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79,754,795원(= 관련 제1사건 판결 원금

322,500,000원 + 지연손해금 57,254,795원)을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413호).

바. 망 G의 상속인인 피고와 그 딸 2명(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C를 상대로 “천안시 동남구 H 답 180㎡ 및 I 답 152㎡(이하 통틀어 ‘관련 제2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G이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2018. 10. 1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41, 이하 ‘관련 제2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018. 10. 25.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바(같은 법원 2018가단252919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관련 제2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2018. 11. 6.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2019. 5. 23. ‘C은 피고에게 관련 제2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 내용의 본안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1) 원고는, ① 관련 제1사건 소송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원고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툼 필요가 없었는데, 명의신탁자 망 G의 상속인인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다투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관련 소송비용 등 합계 76,025,990원(= 관련 제1사건 패소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57,254,795원 + 같은 소송비용 13,271,195원 + 관련 제1사건 변호사 수임료 5,5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② 관련 제1사건 승소를 전제로 원고가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미리 지급하여 준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 22,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며, ③ 피고 등은 관련 제2사건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등을 대신하여 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등 합계 12,578,440원(= 수임료 11,000,000원 + 관련 제2사건 가처분 비용 820,140원 + 관련 제2사건 본안소송 비용 758,300원)을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㉔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관련 제1사건 소송을 다투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한 바 없으며, 관련 제1사건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① 청구는 이유 없고, ㉕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준 것은 맞지만, 원고의 망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과 상계하면 반환할 금액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청구도 이유 없으며, ㉖ 피고 등은 관련 제2사건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적 없고, 관련 제2사건은 무익한 소송이었으며, C의 배우자인 J과 피고가 화해하여 종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③ 청구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제1사건 소송비용 등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제1사건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일 뿐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먼저 피고 측에 연락하여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고의 몫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C에게 같은 취지로 설득하였는데 C이 변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는 실제로 위 매매대금 64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세금 정산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는 그 중 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가 28,000,000원을 반환받는 등 원고가 관련 제1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룬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제1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위하여 대신 다투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 22,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가 2018. 7. 25. 원고로부터 관련 제1사건의 향후 승소를 전제로 하여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고 몫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그 중 28,000,000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쓰라는 취지로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관련 제1사건 소송에서 ‘망 G와 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매매대금의 귀속 문제는 C와 망 G 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즉,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련 제1사건의 승소를 전제로 지급받았다가 일부를 반환하고 남은 돈 22,000,000원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고가 C에게 바로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달리 피고가 위 금원 상당 이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망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4,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 채무 등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련 제2사건 소송비용 등에 대한 청구

갑 제4, 9, 12, 13, 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면, 피고 등이 2018. 8. 내지 같은 해 11.경 C을 상대로 한 관련 제2사건 가처분, 본안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K 담당변호사 L과 위임계약(착수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8.부터 2019. 6.경까지 위 변호사와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관련 제2사건 가처분, 본안소송의 경과 등을 보고받고 자료 등을 제공하며 변론 준비를 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관련 제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위 변호사 측에 합계 12,578,440원(= 수임료 11,000,000원 + 관련 제2사건 가처분 비용 820,140원 + 관련 제2사건 본안소송 비용 758,3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관련 제2사건이 종국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이 무익한 비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2,578,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합계 34,578,440원(= 22,000,000 + 12,578,4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9.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1) 당사자들의 주장 중 오기, 오산 내지 불분명한 부분 등 선행하여 정리하였다.